

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의결된
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을
이에 공포한다.

2023년 9월 19일

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장 김 보 언



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규칙 제48호

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

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(이하 “신분증”이라 한다)의”를 “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”로 한다.

제2조 중 “수영구의회의원에게”를 “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에게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신분증에는”을 “의원의 신분증(이하 “신분증”이라 한다)에는”으로 하고, “의원증 번호”를 “발급번호”로 하며, “기재하고”를 “적고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은 삭제한다

제4조 중 “의회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이”를 “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이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”을 “별지 제1호서식의”로 하고, “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.”를 “등록하여야한다.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”을 “신분증의 분실 또는 훼손이나 기재사항 변경 등으로 신분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의원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”으로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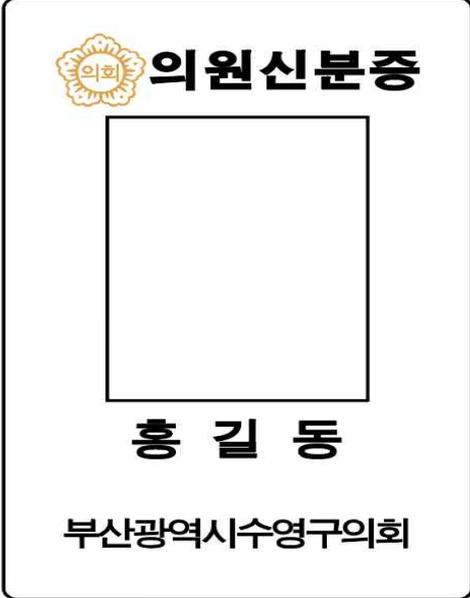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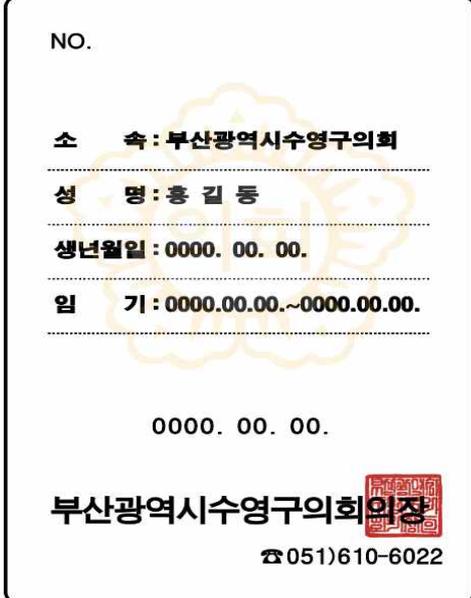
제6조제2항 중 “기재하여야 한다”를 “적은 후 파기해야 한다”로 한다.

별표 및 별지 제1호, 제2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| (앞면) | (뒷면) |
|---|--|
|  |  |

1. 신분증 규격 등
 - 신분증: 가로5.4cm, 세로8.5cm
 - 사진: 가로 3cm, 세로4cm(칼라)
 - 바탕색상: 앞,뒷면(흰색), 글씨(검정색), 의회마크(금색)
 - 의회회장배경바탕 : 의회마크를 불투명도 20% 처리
2. 글자의 크기는 다음과 같다.

| 글자의 구분 | 글자의 크기 | 글자의 종류 |
|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|
| 의원신분증 | 18 | 견고딕(진하게) |
| 한글성명 | 17 | 태고딕(진하게) |
| 부산광역시수영구의회 | 13 | 태고딕 |
| 소속,성명,생년월일,임기 | 8 | 견고딕(진한계) |
| 발급번호 | 8 | 태고딕 |
| 부산광역시수영구의회의장 | 12 | 태고딕(진하게) |
| 기 타 | 8 | 태고딕 |
3. 재질은 PVC 카드로 한다.
4. 인쇄사양은 옅색 및 실크인쇄로 한다.
5. 신분증은 투명 케이스에 넣어 고리로 매달게 하거나 옷깃에 집게하여 달 수 있게 한다.

신분증 재발급 신청서

1. 성 명:
2. 생년월일:
3. 발급번호:
4. 재발급신청사유:

위와 같이 신분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.

첨부: 사진 1매

년 월 일

신 청 인 (인)

◆ 개정취지

법제처의 “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” 및 “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”에 따라 약칭을 정비하고, 용어를 순화하여 법령에 대한 주민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고자 함

◆ 주요내용

가. 약칭 정비 (안 제1조 ~ 안 제4조)

나. 용어의 순화 (안 제3조, 안 제5조, 안 제6조)

다. 별표 및 별지1, 2 정비